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2016년 2월 pp.199~220
한국세무학회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문진주** · 홍기용***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요인인 기부가격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요인들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부행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이며,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 한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며, 경험적 요인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이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세요인을 고려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조세의 경감만으로는 개인기부의 촉진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기부에 대한 사회저변을 성숙시키고 장려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의 원천적 한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일반화에 충분한 자료로서 미흡한 면도 일부 있으나,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측정된 자료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 논문의 결과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여하는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개인기부, 기부가격, 기부금, 조세요인, 비조세요인

* 이 논문은 저자들이 2015.8.18. 2015년 한국경영학회 경영관련통합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조세 및 비조세요인이 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도 자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거제대학교 세무회계과 초빙교수, pr15045@koje.ac.kr, 주저자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ong@tax.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12월 26일 1차수정일 2016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8일

I. 서 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국가주도의 공공복지체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의 기부로 대표되는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원 마련의 수단인 민간기부의 경우, 한국은 과거에 비해 민간의 기부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그 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민 1인당 연도별 순수기부금액 역시 2003년에는 5만7천원, 2005년 7만원, 2007년 10만9천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GDP 대비 기부금 수준은 0.9%¹⁾로 미국의 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전체 민간기부에서 기업의 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개인의 기부가 확대되어 2000년도에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비중이 50 : 50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점차 개인의 기부 규모가 확대되어 2005년에는 60 : 40으로 기업의 기부보다 개인의 기부 비중이 더 크게 변화되었다(손원익, 2009). 이러한 개인기부의 증가는 기업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부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기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론과 관련단체의 홍보활동과 개인의 삶의 지표와 수준이 변화됨에 따라 기부를 통한 만족감 등을 얻는 사회적 요인도 민간기부에서 개인 기부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로 2014년부터 기부금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축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송헌재(2013)는 조세요인인 기부가격²⁾의 탄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조세요인인 기부가격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박기백, 2010 ; 박수범, 2006 ; Feldstein & Taylor, 1976 ; Reece, 1979). 그러나 개인 기부의 결정요인은 조세요인 뿐만은 아니다. 조세요인이외에 비조세요인으로 기부에 대한 홍보나 개인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적영향도 개인의 기부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기부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 정착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고, 아직까지 기부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세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며,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1) ‘기부문화 활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추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2009.7.16.)

2) 기부가격은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제혜택이 커질수록 기부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 조세혜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부가격은 1이 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할수록 기부가격은 한계 소득세율의 영향을 받아 낮아지게 된다.

민간 기부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부금, 특히 개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부의 참여 및 기부 금액의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조세요인인 기부가격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이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해당 자료가 개인의 가구특성, 경제상황, 일상생활, 가치관, 사회적활동 등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패널조사를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패널조사로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보다 표본을 확장하였으며,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 기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세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기부금관련 조세경감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축소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다시 확대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세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증하고, 또한 비조세요인도 개인기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2015년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진주, 홍기용, 2015).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개인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그리고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소개하고, 제Ⅳ장에서는 기술통계량을 통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기부의 개념 및 동기

공익 목적의 사업을 돕거나, 자선을 위해 돈, 시간, 물건 등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기부라고 한다. 기부는 교육, 복지, 환경, 종교,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기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공재모형, 사적소비모형, 비순수공공재모형 등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³⁾

첫째, Warr(1982), Roberts(1984)등이 주장한 공공재 모형은 민간의 기부 동기는 공공재로써,

3) 손원익·박기백(2008)의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의 개인의 기부동기별 모형을 요약하였음.

자선적 기여행위를 설명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지출과 개인 기부의 완전한 대체성으로 정부지출로 인한 민간 기부금의 완전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재 모형 : $U_i = u_i(x_i, g_i + G^*_{-i})$

x_i : 민간재

g_i : 개인 i의 기부금

G^*_{-i} : i외의 타인이 공급하는 공공재

$$G^*_{-i} = \sum_{j \neq i} g_j$$

둘째, 사적소비모형은 기부행위 자체에서 효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모형으로 Menchik & Weisbrod(1987), Andreoni(1990)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사적소비모형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개인의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적소비모형 : $U_i = u_i(x_i, g_i)$

셋째, Andreoni(1990)의 비순수공공재모형은 기부의 동기가 사회 전체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일어나는 경우와 기부 자체의 만족을 얻는 경우 모두를 고려해 혼합된 동기로부터 기부행위를 설명한다. 기부 행위에 있어 앞서 두 모형에서 주장하는 동기들, 즉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불완전한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비순수공공재모형 : $U_i = u_i(x_i, g_i, G)$

$G = g_i + G_{-i}$ 즉, 공공재총량

최근의 연구들은 공공재적 성격과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태욱(2008)은 조세법적인 취지에서 본다면 기부금은 기부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한다면 당해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가 된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기부는 납세자의 개인적 소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사회학에서는 기부 동기에 대해 첫째, 친사회적 행동이론, 둘째, 사회교환이론, 셋째, 자아확장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친사회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내적 기부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정의에 대한 결과로써(서봉연, 1984),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행동으로 기부행위를 설명한다(Kelly, K.S., 1998).

둘째, 사회교환이론은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성과물과 기부의향을 유발하는 기부동기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구성원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며(BI며, 1964 ;

모선희 등, 2006), 개인구성원들은 행동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결정한다(김주원, 2005). 즉, 주관적인 외적 요인이 적절히 제공되었을 때 기부동기를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개인 외적기부동기는 기부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자아확장이론(self extension theory)은 개인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성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도식(self schema)에 통합시킨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자아확장이론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집단, 단체 및 기관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써 포함시키는 것까지 확장 될 수 있다(안신호, 1999). 즉, 타인을 자신의 자아영역에 포함시키면서 자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확장은 이타심과 이기심의 경계를 약하게 만들어서, 모든 타인을 이타심으로써 대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게 되고, 이타적 행위의 기본이 되는 감정이입의 이해도 증가한다(조휘일, 1991). 따라서 자아확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위인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부동기는 개인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이타적 동기 같은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내적상태에서 발생하는 동기와, 사회적 인정과 조세혜택과 같은 경제적 혜택 등과 같이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에 의한 기부동기가 생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철희, 1998).

2. 개인의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

개인의 기부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기부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개인의 기부에 관한 자료 수집이 기업의 자료 수집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의 기부 관련 연구는 설문조사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 관련 연구의 주된 주제는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와 기부행위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해외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종속변수를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사용 하고 있으며,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부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정형화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 소득계층별로 기부가격 탄력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이 기부의 조세가격 변화에 민감하고(Auten, Cliffe & Randolph, 1992) 저소득층은 덜 민감하다는(Anderson & Beier, 1999) 연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더 높다(Clotfelter & Steuerle, 1981)는 반대의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고소득층이 기부의 조세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축소하지 않는(Davie, 1985)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 혜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고소득층은 조세 절감 혜택이 동기의 27%를 설명한다(Cermak, File, & Prince, 1994)는 연구와 조세 유인 외에

도 호혜주의, 집안의 전통, 사회적 유대, 비영리부분의 장기적인 관계(Lindahl, 1995)와 같은 비조세 요인도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Taussig(1967)은 1962년도의 개인 소득세 신고자료(income tax return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선기부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부 유인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았으나, Feldstein(1975a)은 1948~1968년 세금신고자료 중 항목공제에서 기부금 공제가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Taussig(1967)과 달리 자선기부금이 소득공제제도에 의해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제시하였다. Reece(1979)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납세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납세자료 중 항목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로 표본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납세자들이 표본에서 제외되는 점과 기부금 변수로서 분야별 기부금이 아닌 기부금 총액을 사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및 가구의 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1972~1973년의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부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그 보다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⁴⁾

국내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박태규 등(2003)은 2000년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인구비례에 따라 선정한 1,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부가격이 기부결정 여부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수범(2006)은 2002년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를 인구비율에 따라 선정한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본 모두에서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질수록 기부여부와 기부금액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2010)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NaStaB)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2007년도 근로소득자의 기부와 기부가격과의 관계와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가격이 높아지면 기부금이 감소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가격의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반면 송헌재(2013)의 연구에서는 박기백(2010)과 동일하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NaStaB)를 이용하여 2007~2011년 기간을 대상으로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으나, 박기백(2010)과 달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 \sim -9.9$ 정도로 상당히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수성·문성훈(2014), (2015)에서는 세제지원과 기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세제지원은 기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부행위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 연령, 성별, 종교,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 각종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기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소득의 경우 Clotfelter(1980)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기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창순·강철희(2002)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은 기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4) Feldstein(1975b)에서는 종교분야의 기부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양(+)의 관계가 있으나, 개인소득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범(2006)의 연구에서도 소득변수로 가구소득을 사용한 결과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규태 등(2003)의 연구에서는 기부금액과 소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기부금액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연구되었고(구지윤, 2013), 연령의 경우 Feldstein & Clotfelter(1976), Putnam(2000), Clotfelter(1997), 황창순·강철희(2002) 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부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밝혔다. Jackson & Matthews(1995)는 종교가 있는 경우 기부행동과 기부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reeman(1997)은 기혼이며 가족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기부행동이 늘어난다고 하였으며, 황창순·강철희(2002)는 결혼유무는 기부에 관련성이 없지만 가족 수가 많은 경우 기부참여와 기부금 지출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Bekkers(2004)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Thiessen(1968)은 전문직일수록 기부행동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종속변수들의 통제에 따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강철희, 2011). 김근령(2000)은 3~40대 연령에서 기부활동의 강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강철희(2008)는 전문직의 기부참여가 높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일반화에 신중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서희열 등(2008)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사용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으며, 김종성등(2008)에서는 기업에서의 기부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등을 통해 비조세요인들에 대한 기부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는 기부의 결정요인으로서 인구 통계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정부재정과 민간 기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금 유인이 기부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기부수요의 유효세율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일부 연구에서 정부의 조세 혜택이 기부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내적동기에 대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기부 결정요인에 있어서 이러한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인 기부 활성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세혜택, 인구 통계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삶의 만족도)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부는 기부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편익의 제공 등에 의해 결정되지 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 환경적 요인 및 개인의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첫째, 기부가 개인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부가격이 기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다면 1원의 기부를 하는 경우 1원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지만,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형태의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 기부의 가격은 (1-한계세율)이 된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통해 기부가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Feldstein(1975a)에서는 기부를 소비행위로 파악하고 기부에 대한 세후가격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의 기부 유인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조세요인(기부가격)은 개인의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회 심리적 요인도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영석(2000)은 전국규모 기부 행위 서베이를 통해 기부행위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소액기부위주의 기부환경에서는 이타심에 의한 기부참여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나 이웃에 대한 관심,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 등이 개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요인이 기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Clotfelter(1980), 황창순·강철희(2002)등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기부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험적 요인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 교리와 신도들 간의 그룹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자선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학력, 성별, 거주지, 결혼여부, 가족구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구지윤(2013)의 경우 기부행동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참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eldstein & Clotfe수록 기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와 같이 개인의 기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비조세요인은 사회 심리적 요인, 경제적요인, 경험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비조세요인(사회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경험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은 개인의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

5) 국내에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박수범, 2006).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기부참여 측정변수는 기부금지출액의 유무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C_1 = \beta_0 + \beta_1 \ln(GP) + \beta_2 SF + \beta_3 \ln(Y) + \beta_4 HOUSE + \beta_5 RG + \beta_6 AGE + \beta_7 EDU + \beta_8 \geq N + \beta_9 MAR + \beta_{10} FAM + \beta_{11} \cap + \sum YD + \epsilon \quad \text{식(1)}$$

식(1)에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_1 : 기부참여여부 (기부=1, 비기부=0)
- GP : 기부가액
- SF : 만족도
- Y : 총소득(만원)
- $HOUSE$: 주택자가 (자가=1, 아니면=0)
- RE : 종교 (유=1, 무=0)
- AGE : 연령
- EDU : 교육기간
- GEN : 성별 (여성=1, 남성=0)
- MAR : 결혼유무 (유=1, 무=0)
- FAM : 가구원수(명)
- CAP : 거주지역 (수도권=1, 아니면=0)
- YD : 연도별 더미변수

또한 조세 및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토빗(T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기부금액의 경우 다수의 표본에서 기부금의 관찰 값은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토빗모형은 0의 관찰값을 나머지와 다르게 취급하는 추정절차에 기초한 최우법이다. 기부금액은 로그 값을 사용하였으며, 0으로 나타난 자료는 로그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원자료값에 10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ln(C_2) = \beta_0 + \beta_1 \ln(GP) + \beta_2 SF + \beta_3 \ln(Y) + \beta_4 HOUSE + \beta_5 RG + \beta_6 AGE + \beta_7 EDU + \beta_8 \geq N + \beta_9 MAR + \beta_{10} FAM + \beta_{11} \cap + \sum YD + \epsilon \quad \text{식(2)}$$

식(2)에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_2 : 기부금지출액(만원)
- GP : 기부가액
- SF : 만족도
- Y : 총소득(만원)
- $HOUSE$: 주택자가 (자가=1, 아니면=0)
- RE : 종교 (유=1, 무=0)
- AGE : 연령
- EDU : 교육기간
- GEN : 성별 (여성=1, 남성=0)
- MAR : 결혼유무 (유=1, 무=0)
- FAM : 가구원수(명)

CAP : 거주지역 (수도권=1, 아니면=0)

YD : 연도별 더미변수

3. 연구변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기부참여여부와 기부금액 등 두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기적인 기부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으며, 정기기부에서는 교회나 절 등의 종교단체에 내는 십일조와 시주 등 종교기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종속변수의 측정에서 이들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는 1,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여 이항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개인 기부금액은 각 가구주의 연간 기부 총액(단위 : 만원)이며, 실제 값과 로그 값을 모두 고려했다. 패널분석의 경우 각 연도별 기부금액은 소비자 물가지수(2005년=100)를 기준으로 조정한 실질소득을 사용했다. 기부금액이 0인 경우, 로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원래 기부금 총액에 모두 10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조선주, 2010).

나. 독립변수

(1) 조세요인

조세요인으로는 기부가격을 사용하였다. 기부가격은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제혜택이 커질수록 기부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 $\text{기부가격} = 1 -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으로 계산하여 소득구간별 기부가격의 추세를 이용하는 경우와 한계세율에 의한 연 소득구간별 기부가격의 추세를 이용하는 경우⁶⁾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계세율을 바탕으로 한 기부가격을 사용하였다. 조세혜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부가격은 1이 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할수록 기부가격은 한계소득세율의 영향을 받아 낮아지게 된다.

세법상 과세표준을 도출하려면 연간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외해야 하는데 한국복지패널자료로 개인별 상세한 공제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간 총근로소득에서 세법상 근로소득공제기준(2005년~2013년)을 반영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했고 세법상 기본공제를 반영해 가구의 가구원수×100만원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제외했으며 특별공제에서는 표준공제만을 고려해 가구주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여 가구주의 과세표준을 설정했다.⁷⁾ 이러한 방식은

6) 응답자 전체가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한 후, 기부시 한계세율을 이용해 기부가격을 추정한다. 한계소득세율을 도출하기 위한 산출세액과 과세표준과의 관계는 손원익(2008)의 연구를 참조했다.

7) 본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는 물론 추가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부녀자,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의 가구원 구성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만을 고려했다. 또한

각종 공제 및 보조금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화하여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2) 비조세요인

비조세요인은 첫째, 사회 심리적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은 한국복지패널에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만족도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매우불만족’은 1, ‘불만족’은 2, ‘보통’은 3, ‘만족’은 4, ‘매우만족’은 5의 값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우선 소득변수는 해당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이다. 이 역시 패널분석의 경우 각 연도별 기부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기준으로 조정한 실질소득을 사용하였다. 로그를 취한 소득을 변수로 사용하면 기부의 소득 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주택 보유 형태가 소득의 주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는 변수로 주택의 자가소유여부(house)를 추가하였다. 셋째, 경험적 요인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더미변수를 1로 하여 경험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이 십일조와 같은 정기적인 종교기부금을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리와 신도들 간의 그룹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자선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성별, 결혼유무, 가구원수, 거주지역을 고려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0, 전문대학 재학 이상은 1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더미를 1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결혼상태를 1로 하였다.

4. 연구표본

개인 기부의 행동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름다운 재단에서 한국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사단법인 불런티어21에서 주관한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 현황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기부가격의 탄력성 분석을 위한 자료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재정패널자료(NaSTaB)를 이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과 불런티어21의 자료는 모두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에 특화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수가 크지 않고 기부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속성들에 대한 답변이 다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기타 소득공제 역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용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특별 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하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했다.

소 부정확하며 자료 접근에 다소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의 경우 기부와 관련된 소득과 조세자료가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조세요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경제활동,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여가, 일상생활, 사회적 자본, 가치관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해 패널조사로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⁸⁾ 기부관련 문항으로 가구별 기부 금액, 자원봉사 여부 및 시간 등이 있지만 조세제도와 관련한 분석을 위한 상세한 공제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기부관련 문항(기부의 정기성, 기부 분야 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2006년 1차 웨이브부터 2014년 발표된 9차 웨이브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가구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병합하여 가구주의 기부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전체 연구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연구표본에서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부참여의 평균은 0.12이며, 기부금액은 평균 42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부가격은 평균 0.92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평균 2,410만원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표본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52%이며, 연령은 평균 58.65세로 본 자료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24%가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중 여성이 69%, 기혼자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평균 2.43명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8) 2014년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 보고서 인용

〈표 1〉 기술통계량(전체 : 표본수=47,520)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1(기부참여)	0.12	0.45	0	1
C2(기부금액)	42	148.94	0	3800
GP(기부가격)	0.92	0.07	0.65	1
SF(만족도)	4.1	2.8	1	5
Y(소득)	2410.18	2942.06	0	45282
HOUSE(자가여부)	0.54	0.48	0	1
RE(종교)	0.52	0.50	0	1
AGE(연령)	58.65	25.06	19	76
EDU(교육기간)	0.24	0.48	0	1
GEN(성별)	0.69	0.45	0	1
MAR(결혼유무)	0.64	0.42	0	1
FAM(가구원수)	2.43	1.28	1	8
CAP(거주지역)	0.39	0.50	0	1

〈표 2〉의 상관관계분석표에서는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로써 변수들 간에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관계수의 값이 높지는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을 위해 OLS로 VIF값을 확인하였으나, VIF 값이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②	-0.245***	1									
③	-0.684***	0.377**	1								
④	-0.076***	0.134**	0.103***	1							
⑤	-0.142***	0.188	-0.077***	0.103	1						
⑥	-0.197***	0.016	0.254***	0.204	0.062	1					
⑦	-0.236***	0.002	0.294***	-0.025	0.144	-0.257***	1				
⑧	0.243***	0.031	-0.321***	0.017	0.014***	-0.188***	-0.108***	1			
⑨	-0.140***	0.061**	0.227***	0.032	0.033	0.451***	-0.081***	-0.223***	1		
⑩	-0.042***	0.120**	0.121***	0.252***	0.188	0.081***	0.021	-0.013	0.282***	1	
⑪	-0.075***	0.001	0.108***	-0.170***	0.090***	-0.007***	0.112***	-0.025	0.042	0.038	1

*, **, ***은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 | |
|--------------|------------------------|
| ① GP : 기부가격 | ② SF : 만족도 |
| ③ Y : 총소득 | ④ HOUSE : 주택자가 |
| ⑤ RE : 종교 | ⑥ AGE : 연령 |
| ⑦ EDU : 교육기간 | ⑧ GEN : 성별(여성=1, 남성=0) |
| ⑨ MAR : 결혼유무 | ⑩ FAM : 가구원수 |
| ⑪ CAP : 거주지역 | |

2. 실증분석 결과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부참여여부와 기부금액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첫째로, 기부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부가격, 만족도, 소득, 종교, 교육수준, 성별, 거주지역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은 -0.0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헌재(2013)등의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는 0.782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인 소득은 1.102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범(2006)과 이승호(201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경험적요인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0.036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자선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이 기부참여에 각각 0.058, 0.589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지윤(2013)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거주지역은 -0.467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기부참여가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박기백(2010), 송헌재(2013)의 결과에서와 같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상위그룹(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과 소득 하위그룹(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그룹과 소득 하위그룹 모두 조세요인(기부가격)에 대해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었으며,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경제적인(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험적요인(종교)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그룹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인구통계적요인 중에서도 소득 하위그룹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가구원수, 거주지역이 기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상위그룹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속변수가 기부참여여부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소득 상위그룹		소득 하위그룹	
	계수	wald χ^2	계수	t값	계수	t값
GP	-0.032	22.52***	-0.029	19.46***	-0.012	2.93*
SF	0.782	58.69***	0.236	23.67***	0.324	25.81***
ln(Y)	1.102	320.87***	1.817	325.06***	0.955	127.41***
HOUSE	0.043	0.56	0.052	0.38	-0.075	0.91
RE	0.036	7.32***	0.002	0.10	0.048	8.96***
AGE	-0.012	0.67	-0.001	0.40	0.022	33.51***
EDU	0.058	23.56***	0.062	19.36***	0.102	61.56***
GEN	0.589	67.32***	0.023	1.03	0.874	140.62***
MAR	-0.012	-342.87*	-0.012	-370.02*	-0.003	-0.22
FAM	0.024	0.56	0.003	0.59	-0.085	9.21***
CAP	-0.467	62.76***	-0.317	61.72***	-0.563	84.57***
YD	있음		있음		있음	
표본수	47520		2043		45477	
log-likelihood	2480		875		2240	
Pseudo. R^2	0.1348		0.1425		0.1762	

주 :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변수정의

- GP : 기부가격
 SF : 만족도
 Y : 총소득(만원)
 HOUSE : 주택자가 (자가=1, 아니면=0)
 RE : 종교 (유=1, 무=0)
 AGE : 연령
 EDU : 교육기간
 GEN : 성별 (여성=1, 남성=0)
 MAR : 결혼유무 (유=1, 무=0)
 FAM : 가구원수(명)
 CAP : 거주지역 (수도권=1, 아니면=0)
 YD : 연도별 더미변수

둘째로, 종속변수로 기부금액을 사용하여 조세와 비조세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분석결과 1) 조세요인인 기부가격의 탄력성이 -2.036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기부가격이 1% 증가할 때 기부금액이 2.036%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기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상위그룹과 소득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7.872, -7.634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며, 더 높은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비조세요인에서는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이 1.438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소득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득 하위그룹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인 소득은 3.107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하위그룹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요인인 종교도 0.661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또한 소득 하위그룹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인구통계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참여에서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 종속변수가 기부금액인 경우의 Tobit 모형 분석결과

	전체		소득 상위그룹		소득 하위그룹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n(GP)	-2.036	-2.78**	-7.872	-1.89*	-7.634	-6.93***
SF	1.438	15.67***	0.638	0.40	1.089	7.28***
ln(Y)	3.107	23.76***	-0.108	-0.34	3.267	22.82***
HOUSE	0.113	1.72*	0.382	1.32	0.193	1.50
RE	0.661	5.62***	0.521	0.96	0.989	8.23***
AGE	0.003	0.58	0.068	2.05**	0.006	1.02
EDU	0.098	4.28***	-0.067	-0.80	0.096	4.43***
GEN	0.897	7.84***	-0.763	-0.57	0.643	6.54***
MAR	0.213	0.52	0.023	0.45	0.004	0.34
FAM	0.015	0.84	0.332	1.49	0.032	1.61
CAP	-0.982	8.29***	0.289	0.75	-1.097	-10.81***
YD	있음		있음		있음	
표본수	47520		2043		45477	
log-likelihood	-10652		-4753		-9943	
Pseudo. R ²	0.1883		0.1835		0.2004	

주 : 1. 변수의 정의는 <표 2>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 1차 웨이브부터 2014년 9차 웨이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종속변수를 기부참여여부인 경우, 1)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는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며, 경험적 요인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이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상위그룹(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과 소득 하위그룹(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요인(기부가격),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경제적요인(소득)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적요인(종교)와, 인구통계적요인인 연령, 성별, 가구원수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그룹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로 기부금액인 경우, 조세와 비조세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세요인인 기부가격의 탄력성이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기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조세요인 중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도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요인도 기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경험적 요인인 종교도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인구통계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기부금액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세요인을 고려한 조세정책 뿐만 아니라 비조세요인인 사회 심리적,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으로 민간 기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기부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이러한 가격탄력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의 기부는 조세요인의 영향이외에도, 비조세요인인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도 개인의 기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은 기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국내 나눔 실태, 2013)에서도 이러한 본 연구의결과를 확인

해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부 참여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5%로 미참여자(28.2%)보다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요인 이외에도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개인 삶의 만족도인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개선하는 정책이 기부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복지패널자료의 원천적인 한계점, 즉 설문 방식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갖는 한계점과 표본 설정에서 오는 편의가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각 분야별 기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요인 이외에도 비조세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는 조세혜택 이외에도 개인 삶의 만족도와 이해를 수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 1-29.
- 강철희 · 변은지 · 구지윤, 2011, “기부 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Vol.38 no.1.
- 강철희 · 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0권 제1호.
-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7 : 93-122.
- 김근령, 2000, “대기업사무직근로자들의 후원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 마케팅믹스 중심의 모금개발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성 · 문성훈, 2014,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 연구』, 제31권 제1호.
- 김수성 · 문성훈, 20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김종성 · 홍정화 · 김완희, 2008,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김주원 · 김용준, 2008,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37권 제3호 : 629-658.
- 모선희 · 김형수 · 유성호 · 윤경아, 2006, 『현대 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문진주·홍기용, 2015, “조세 및 비조세요인이 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 2015년 경영관련통합학술대회 논문집, .2015.8.18., 한국경영학회
- 박기백, 2010, “조세감면이 근로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143-158.
- 박수범, 2006,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 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1호 : 137-162.
- 박태규 · 윤병호 · 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손원익, 2009, “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재정학연구』, 제2권 제3호 : 29-60.
- 손원익 · 박기백,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송헌재, 2013,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 151-178.

- 안신호, 1999, “한국의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자아개념-행동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1호 : 121-164.
- 정영석, 2000, “자선 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한국 개별 가구의 기부 행위에 대한 실증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주, 2010, “성별 기부특성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1호, 165-203.
- 황창순·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2호 : 33-73.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glow Giving?, *Economic Journal* : 464-477.
- Bekkers, Rene,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h.D-Dissertation, Utrecht University.
- Clotfelter, Charles T and C. Eugene Steuerle, 1981, Charitable Contributions, in Henry Aaron and Joseph Pechman,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403-466.
- Clotfelter, Charles T., 1980,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 319-340.
- Feldstein and Charles Clotfelter, 1976,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 : 1-26.
- Feldstein, Martin and Amy Taylo, 1976,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Econometrica*, Vol.44 No.6 : 1201-1222.
- Feldstein, Martin, 1975a,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 : Part I-Aggregate and Distributional Effects, *National Tax Journal*, Vol. XXVIII No.1 : 81-100
- Freeman, Richard B., 1997, Working for Nothing :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5 No.1 Part 2 : Essays in Honor of Yoram Ben-Porath, Jan, S140-S166.
- Jackson, Nick C. and R. Mark Matthews, 1995, Using Public Feedback to Increase Contributions to a Multipurpose Senior Center,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Analysis*, 28 : 449-455.
- Kelly, K. S., 1998, Effective Fund-Raising Management, 2nd ess., Mahwah : LEA.
- Menchik. P. & B. Weisbrod, 1987, Volunteer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2 : 159-183.
- Reece, William s., 1979, Charitable Contributions : New Evidence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No.1 : 142-151.
- Roberts, R., 1984,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Wealth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0 : 584-599.

- Taussing, Michael K., 1967,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Vol.XXI No.1 : 1—19.
- Warr, P., 1982,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nd Private Char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9 : 131—138.

The Influence of Tax and Non – Tax Factors on Individual Donations*

Jin Joo Moon** · Ki Yong Hong***

—〈Abstract〉—

This study tax factor (donation Price) and non-tax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demographic factors and empirical factors) to demonstrate how this affects the analysis of individual donations. Individual contribution appears to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However, the statistics do not specifically related to the donation yet made a systematic building. But this is because empirical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ribution by limited resources ; most of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all the research relating to tax factor. There were no studies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factors.

This study respect is greater seems to suggest that point in that a policy considering all the non – tax and tax wa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 contributions. In this stud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Tobit model for to the tax and non-tax impact 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donations was analyzed.

Research result in the analysis for the entire sample to show the results that participate in the donation, the lower tax factor variable contribution rates, giving of non-tax is show the results that the donation involved higher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satisfaction. In addition, donations and participation in higher income and economic factors, when the empirical factors in religious activities appeared to affect donation behavior. Of demographic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education and gender, residential area to donate. That th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hould not only tax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tax factor as far as non – tax factors to psychosocial, economic, empirical and policy approaches that take into account demographic factors in order to activate the donation culture in Korea to suggest. That alone should mean a reduction of tax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foundation for cultural maturity and encourage the social base for the donation because the limit on the promotion of private donations.

This paper is meant in terms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were used as lacking sufficient data to shave some generalization due to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data, but fundamentally, widely systematically measured data. I believe that such a bar to contribute uti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resource for future donations cultural diffusion.

〈Key words〉 Tax factor, donation price, Non-Tax factor, individual donation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5.

**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Koje College, pr15045@koje.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ong@tax.kr, Corresponding Author